



## 법령정보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 2009. 06. 0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제품의 포장지가 한글로 표시되어 국내식품으로 오인·혼동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원산지와 함께 OEM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가. OEM 수입식품의 주표시면에 위탁

생산제품 표시

- (1) OEM 수입식품 포장지가 한글로 표시되어 국내식품으로 오인·혼동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2) OEM 수입식품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외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선택권을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09-193호, 2009. 05. 28 -

환경부는 먹는물 다원화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먹는샘물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사업자에게는 양질의 샘물인 지하수 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로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 (1)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등 3자간 대표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제도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다. 양질의 샘물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관리능력 배양과 책임성 부여

- (1) 유효기간을 매 회 5년으로 하던 것을 최초 3년, 1차 연장허가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부터는 매 회 10년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와 물산업육성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품질관리연구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